

## 개인형 IRP란?

Individual Retirement Pension

요즘같이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조각조각 푼돈화 되는 일이 많은 경우, 이 퇴직금을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잘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는 은퇴 후 기간까지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.

IRP는 이런 퇴직금을 모아 한 계좌에 가입하고 재직중에도 근로자의 여유자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.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(퇴직연금사업자)을 정하고 계약하게 됩니다.

퇴직연금(DB, DC, 기업형IRP)에 가입한 재직근로자, 퇴직일시금을 받은 퇴직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,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, 직역연금 가입자 (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 등)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### 개인형퇴직연금(IRP)

STEP 1

금융기관을 선택하여 IRP 계좌개설

STEP 2

>

퇴직, <u>이직시 받은 퇴직급여</u> 또는 개인추가납입금 입금

STEP 3

>

예금, 펀드,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

中:EIF' 是 特.

STEP 4

일시금 수령 또는 55세이후 연금수령 선택 가능

# 개인형퇴직연금(IRP)장점

절세효과 🕡

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으로 투자 → 투자원금 커짐

● 퇴직금제도에∰퇴직금 IRP 입금 시 입금비율만큼 퇴직소득세 환급

RP 운용기간 중에는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→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(3.3%~5.5%)가 부과되어 이자소득세(15.4%)보다 유리

세액공제혜택

上块 经新人

• 연간 1,8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 가능

/ 개인연금, 확정기여형(DC형)과 합산, 연 700만원까지 13.2% 세액공제 혜택

### 자유로운해지

▫ 의무가입기간 없음 :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해지

▫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가능

#### 다양한투자

• 정기예금, 펀드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능